

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영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6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10월 14일

발의자 : 최영주 의원(1명)

찬성자 : 경만선, 김소영, 김준례,  
김태호, 노승재, 안광석,  
이종환, 최기찬, 황규복  
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2019년 1월 투자·출연기관 간 상이한 임원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통일하여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고자 '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'을 시장방침으로 세웠고, 개정 후 계획에 따라 실행할 예정이었음.
- 약 3년이 지난 2021년 10월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연임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임원이 연임할 경우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음.
- 따라서 공기업담당관이 세운 방침의 목적에 맞게 서울문화재단의 연임 규정을 1년 단위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케 하고, 이를 통해 우수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함(안 제9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3년 단위로 연할 수 있으며,” 를 “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,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,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 <u>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,</u> 그     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   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9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<u>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,</u> --      -----     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